

사 례

B Case

(소장 작성일 1993년 5월 20일)

1. 사건개요

- 원고 B는 1992년 1월10일 모터사이클을 타고 테네시주 쉐비군 멤피스시 코닝가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음.
- 그는 자동차와 충돌하였으며 사고당시 피고에 의해 제조, 공급된 모터사이클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음.
- 헬멧이 충격으로 인해 원고의 머리에서 벗겨짐.
- 원고는 영구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었음.

2. 원고주장

- 턱끈을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이 머리에서 벗겨졌으므로 의도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, 구성, 제조한 과실이 있음.
- 예견되는 충격에 지탱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판매, 광고하였음.
- 경고라벨의 위치가 부적절함.

3. 요구 배상금

- 과거, 현재, 미래의 정서적/정신적 피해, 친우관계 상실, 소득상실, 간호 및 의료비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금 일억불(\$100,000,000)
- 의도적, 과실적,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일억불(\$100,000,000)
- 그리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다른 일반 손해배상

4. 요구합의금 : 일천만불(\$10,000,000)

5. 합의(Settlement) : 합의금-\$1,433,000

(합의일자-2000년 3월)

6. 제품사양 : 제조일- 90년 3월

제품규격-DOT, SNELL M 90

7. 원고측 주장유형

- 헬멧이 머리에서 이탈되었다.
- 충격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
- 주의경고가 부적절하다.
- 턱끈이 뜯어졌다.
- 볼트가 날카롭다.
- "D" ring이 날카롭다.
- 설계가 잘못되었다.
- 거꾸로쓰면 안된다는 경고가 없다.
- 충격흡수 라이너가 없다.
- 리벳이 4개가 아니고 왜 2개인가?
- 재료를 yyy를 사용하지 않았다.

8. 요구 및 방어자료

A. 요구자료

- (1) 품질매뉴얼, 연도별 조직도, 회사규정(문서관리규정, 검사규정...)
- (2) 대미 수출량, 수출액, 반품내역
- (3) 고객불만 내역, 반품내역
- (4) 제조사양서, 설계변경이력
- (5) 인증테스트 성적서, 인증서, 자체 로트테스트 성적서 (21건)
- (6) 테스트 절차 사진 설명
- (7) 주의라벨 및 사용설명서, 광고문
- (8) 주주총회기록 및 주식관련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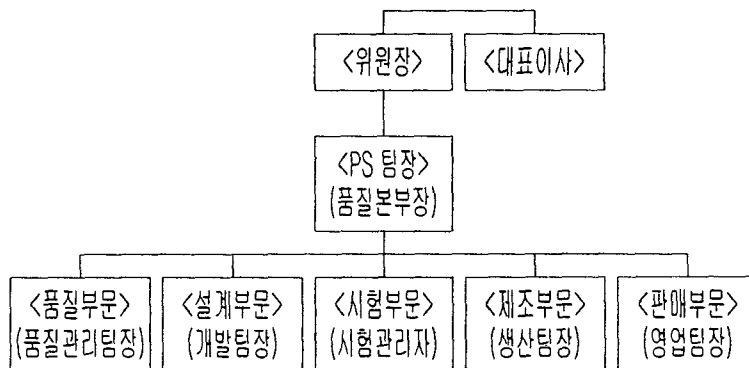
B. 방어자료 (자사)

- (1) 턱끈 파열강도 실시 및 자료 제출
- (2) 재현테스트실시 비디오테이프 제출
- (3) 표본 SAMPLE 제출 및 성능증명
- (4) Deposition(증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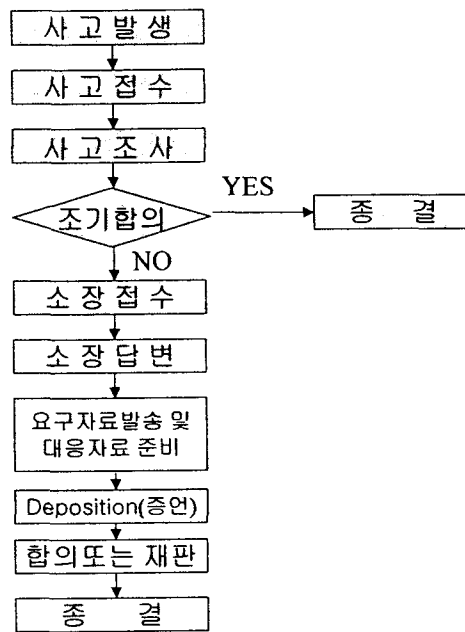
9. 대응 SYSTEM

- (1) 보험가입
- (2) 변호사 고용- 지역변호사 연계
- (3) 헬멧 전문가 고용
- (4) 표본샘플 보관
- (5) PS(제품안전) 운영위원회 운영

• PS(제품안전) 운영위원회 운영



(6) 대응 Flow



10. 결론

- 8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원고가 재판장에 나타나 동정심을 유도할 경우 미국의 배심원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원고측이 주장하는 주의 라벨의 부착위치가 문제가 되어 판결이 날 경우 원고측 합의요구금액 일천만불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를 선택하였음.
- \$ 10,000,000을 상회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최소금액인 \$1,433,000에 합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꾸준히 진행한 제조물책임 대응 활동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원고측에게 제시함으로써 원고측은 제품의 설계, 제조상의 결함을 증명할 수 없었으며 승소의 가능성이 낮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.

-아래-

- (1) 설계상 결함이 없음을 증명-성능테스트 실시
- (2) 제조상 결함이 없음을 증명-표본샘플 재연테스트 실시
- (3) 문서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요구자료 제출이 가능
- (4)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입증된 품질관리 방법이 인정됨
- (5) 증언에서의 합리적 답변으로 원고측 주장을 방어함